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체육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입학자격)

- 1)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학사학위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2) 박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석사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3) (우수학생의 유치) 체육학과 소속 교수들은 체육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입학정원) 입학정원은 엄정하게 관리하며, 학문수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원외 입학)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 외국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
- 4) 기타 국가법령이나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된 사람

제6조 (편입학)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7조 (교육과정)

- 1) 박사과정의 경우, 매학기 취득 학점 중 2/3 이상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과목개설)

- 1) 매학기 9과목을 개설하며, 공통교양과목 3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 2) 개설된 과목 중 2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제9조 (교·강사 배정)

- 1) 수업은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10조 (지도교수의 선정)

- ① 지도교수의 선정은 원생의 제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전임교원(죽전 체육교육과 및 천안 스포츠과학대학 소속)만 가능하다.
- ② 필히 지도교수의 서명을 먼저 받고, 주임교수가 서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 ③ 전임교원 외 지도교수를 선정 시는 입학에 기여하였을 경우 가능하며, 입학 지원 시 추천서 제출 혹은 면접 시 지도교수를 선정한 상태임을 밝혀야 인정된다.

제11조 (지도교수 변경)

- ①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지도교수의 퇴임 또는 휴직 등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자격시험

- 제12조 (종합학력시험 응시자격) 종합학력시험의 응시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해당 학위 과정의 이수 기준에 따라 전공학점(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과 석사와 박사과정은 각각 연구지도세미나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18학점) 취득
- ② 외국어자격시험 통과
- ※ 외국어자격시험 면제 기준: 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시험 (TOEFL(PBT530점·CBT197점·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M2 이상) 기준점수 획득자와 대학원 학칙에 지정된 외국 수학 경험자
- ※ 외국인 원생: 한국어시험(TOPIK) 4등급 이상

제13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1) SCI 또는 SSCI급 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종합학력시험을 1과목 면제한다. (단, 해당 논문 1편당 1명만 면제)
 - ① 게재 인정 일자: 입학일로부터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
 - ② 면제 승인 절차: 해당 학기의 종합학력시험 공지일로부터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에 게재 논문(원본 또는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로부터 종합학력시험 면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논문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전공유사분야에 한하여 인정된다.
- 2) 타 대학원에서 종합학력시험을 치루고 편입한 원생의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 3) 박사과정 원생의 경우 예비발표 발표기준점수 중 등재지 기준으로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종합학력시험 1과목을 면제한다. (1과목에 한하여 면제 가능) <개정 2023.05.30.>

제14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1) 석사과정은 수강하였던 수업 교과목 중 2과목, 박사과정은 수강하였던 수업 교과목 중 4과목을 시행하며, 필기시험으로만 시행하며 지도교수의 교과목은 1과목으로 한다. 단, 학부연계과정의 원생의 경우 전공학점(학부 연계과정 중 취득한 대학원 학점을 인정함) 취득한 이후부터 예비발표를 신청할 수 있다.
- 2)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수업한 과목 중에서 수강한 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
- 3) 합격기준: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 4) 종합학력시험의 채점은 해당 교과목을 출제한 교강사가 채점한다.
- 5) 불합격자는 같은 학기에 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에 재시험에 응시한다. 재시험을 시행시에는 이전에 전임교원이 수업한 과목 중 이전 시험과목과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 6) 종합학력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과목에 한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학기에 재응시한다.
 - ① 부정행위의 범위: 타인의 답안지 보기, 준비된 쪽지 감추어 보기, 타인과 쪽지 주고받기, 교과서나 자료 보기, 스마트기기 사용 등
 - ②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회 경고 후 2회부터 시험장에서 퇴실되어 응시한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한다.

제15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자격시험의 과목과 면제 기준은 일반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6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선택) 대학원 체육학과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취득은 논문제출로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17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8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계획서 및 연구논문은 발표자료가 아니며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던 신규 내용의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한다.

제19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대학원 전공세미나 발표의 절차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① 논문계획서 발표: 논문작성 이전에 연구논문 형태의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논문계획서는 전공 교수들이 검토 가능하도록 1주일 전에 논문계획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 심사: 논문계획서 발표 시 심사위원(석사과정은 내부 3명, 박사과정은 내부 3명과 외부 2명)을 선정하고 심사위원과 학과 교수가 같이 참석하여 논문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논문계획서 발표회: 매 학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회는 수업의 일환이므로 재학생들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 승인 후 학과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문지도를 받도록 권장한다.

③ 소논문 게재: 박사과정은 체육학과 예비발표 발표기준점수 250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3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예비발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은 학위논문제출 전 주저자(제1 또는 교신저자)로서 한 편 이상의 학술지(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 있어야 한다. 또는 연구실에 따라 외국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은 학위논문제출 전 1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예비발표 신청이 가능하다).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05.30.>

1.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신설 2023.05.30.>

가. 기여율 계산 방법

- 단독 : 1
-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 \times 2$
- 공동연구(참여) : $\{1/(n+1)\}$
- 본인포함 제1저자가 3인 이상 또는 본인포함 교신저자가 3인 이상: $\{1/(n+1)\}$

2. 위 1호에서의 n은 실연구자 수를 말하며, 전체 저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산출한다. 다만, 저자 중 지도교수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n은 전체 연구자 수에서 지도교수 1명을 뺀 실연구자 수를 말한다. <개정 2023.05.30.>

3. 연구자 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체연구자 수 : 연구에 참여하고 저자로 게재된 전체 연구진의 수

나. 실연구자 수 : 연구에 게재된 저자 중 지도교수가 포함된 경우, 전체 연구자 수에서 지도교수 1명을 제외한 수를 말한다.

제20조 (논문심사위원) 석사과정은 내부교원 3명, 박사과정은 내부교원 3명, 외부심사위원 2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공교수 2인 이상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논문심사 절차)

-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동일 학기에 진행하지 않고, 필히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를 한 다음 학기 이후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05.30.>
-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연구계획서 발표에 합격한 원생에 한해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장소, 심사내용, 심사자의 서명이 있는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한다.

제23조 (논문대체물 제출)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한다.

제24조 (학위의 종류) 석사학위는 체육학석사, 박사학위는 체육학박사 또는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 25조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의 취소) 제출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지도교수 경위서, 논문작성자 자필경위서, 논문표절대조 확인서 등을 수령하고 대상자에게 학위 취소를 통보한다. 학위 취소 후, 학적상태는 수료로 기재되며 추후 본 대학원에서의 학위 취득은 불허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26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9. 1)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의 내용은 2024년 재학중인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에게 전면 시행한다. 단, 제19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규정은
2024년 9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업적 평가기준

<원문개정 2023.05.30.>

【일반논문】

평가구분		인 정 기 준	기준점수
국 내 학술지	A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KCI 검증 완료 시 인정>	150
	B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KCI 검증 완료 시 인정>	100
	C	스포츠과학연구소(천안캠퍼스), 교과교육연구(죽전캠퍼스) ※ 두 학술지 중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1회 출판에 한해 인정	100
	D	A, B 이외에 ISSN이 부여된 정기 학술지의 논문 *전문학회(기관) 이외에서 상업적 목적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음	50
	E	특정학문분야의 심도 있는 학술논문만을 묶어 편찬된 국내 전문학술도서 중의 한 개의 장	50
국 제 학술지	A	국제저명학술지 * SSCI 전체 저널 중 IF 15 이상, SCIE 전체 저널 중 IF 30 이상 (논문 게재년도 기준 직전 2년 전 JCR값을 적용)	2,000
	B	A&HCI 등재학술지	600
	C	SSCI 등재학술지	450
	D	SCI, SCIE 등재학술지	300
	E	SCOPUS 등재학술지 <대학정보공시의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	200

【학술발표 및 저서】

평가구분	인 정 기 준	기준점수
교내 학술발표	체육학과 학술세미나 및 전공세미나 1회당 ※ 세미나 자료만 제출하고 미발표 시 점수 불인정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이중 발표 불가 ※ 1회 필수 발표	30
교외 학술발표	체육관련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1회당 ※ 1회당 점수를 말하며, 횟수 제한 없음	50
저서 출판	1회만 인정하며, 페이지수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다만, 개정판 출판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30
전공세미나 및 예비발표 참여	전공세미나 및 예비발표 참여 1회당 ※ 본인이 전공세미나 발표 및 예비발표를 하는 경우는 제외 ※ 예비발표 신청 전까지의 점수만 인정	20